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편입 등〉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23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74호)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81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8
1.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편입	8
2. 출판기념회 사전 신고, 판매 제한, 수입·지출 보고 등	11

I. 제안경위

1. 주진우 의원안

가. 제 안 자 : 주진우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6. 23.

다. 회 부 일 : 2025. 6. 24.

2. 김미애 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6. 25.

다. 회 부 일 : 2025. 6. 26.

3. 김민전 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6. 25.

다. 회 부 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주진우 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미비하여,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입으로 보지 않아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직선거법도 선거일 90일 전부터의 개최만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최가 가능함. 이로 인해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의 대규모 현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과거에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입법로비 사건이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시도 역시 있었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왔음.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 등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 나.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하며, 같은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0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 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기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등).

2. 김미애 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음.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나,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함)가 자신의 출판기념

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의 수량은 1권(또는 1세트)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출판물 판매 제한 위반의 죄 또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 보고 위반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각각 그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49조의2 신설).

마. 출판물 판매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49조의3 신설 등).

3. 김민전 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 나.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라.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둠(안 제45조제2항제7호 및 제46조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편입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획득한 참가비, 출판물 판매수익 등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주진우의원안	김미애의원안	김민전의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	제3조(정의) ----- ----- ----- -.	제3조(정의) ----- ----- ----- -.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 ----- --.	1. ----- ----- --.	1. -----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설>	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수입	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	아. (김미애 의원안과 같음)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 선거일 90일 이전 또는 선거일 이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판기념회는 책을 비롯한 저작물을 집필한 경우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고 저작물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 등을 독자 또는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행사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경우 저작물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 및 차후 계획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장료, 참가비, 책값 등으로 모금되는 금액이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²⁾ 행사 자체 또는 모금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 신고·공개 대상이 아니며, 저작물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1)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생략)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점에서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³⁾⁴⁾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정치자금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활동이 「정치자금법」의 규율하에 이루어져,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 되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본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도서 판매행위를 「정치자금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규제 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향후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 즉 아직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확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그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구체적인 입법안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주진우의원안**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인세 등 출판물 자체의 판매수입으로 함으로써 행사 당시의 판매수익, 행사 이후 대량 구매로 인한 인세 증가분 등 출판물 판매수입 자체에 집중하는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김미애의원안**과 **김민전의원안**은 판매수입뿐 아니라 참가비 또한 수익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서적 판매 외에도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

3) 김대근 외,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p.5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4) 조선일보, “국감·총선 앞두고… ‘돈봉투 출판기념회’ 여야 없이 기승”, 2023.9.19.

는 대가성 현금거래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방식과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임.

2. 출판기념회 사전 신고, 판매 제한, 수입·지출 보고 등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정가 및 수량에 제한을 두며, 개최 이후 얻은 수입과 사용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출판기념회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

현행	주진우의원안	김미애의원안	김민전의원안
제6장 기부의 제한 <신설>	제6장 기부 등의 제한 제32조의2(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등)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판기념회의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제6장의2 출판기념회 제한 제33조의2(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판매의 제한)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판기념회에서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의 수량은 1권(출	제33조의2(출판기념회)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사람은 출판물은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0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판물이 2권 이상의 세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1세트를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판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대금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그 약속으로 판매대금을 대신하여 출판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33조의3(출판물 판매대금 결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 보고)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제33조의3(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 보고)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세부내역,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국회의원등은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판기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판물의 정가, 판매수량 등 판매내역
3. 출판물 구매자 현황 및 구매방식(현금, 신용카드 등)
4. 출판기념회 개최 비용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 보고의 세부사항,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5(출판기념회 관련 범죄의 고발 및 수사 등) 관할

		<u>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가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0조의2(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 보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을 출판기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3조의2(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판매)를 위반하여 출판물을 판매한 자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한 자
③ (생략)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3조의4(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 보고)를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0조의2(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 보고) 제1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한 사람		
<신 설>	5의3. 제32조의2(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제2항을 위반하여 출판물을 부당하게 판매한 사람		
6.·7. (생 략)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현행과 같음)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 ----- -----.	6.·7.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2조의2(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제1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사람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로 얻은 수익을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 하면서, 기존의 정치자금과 같이, 「정치자금법」 내에 그 수익에 관한 세부 사항, 즉 기념회 개최 단계 관리부터 사후 수익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출판기념회 사전신고, (가격 또는 수량) 판매제한, 수입·지출 사후보고, 벌칙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별 세부 내용 》

구 분		주진우의원안	김미애의원안	김민전의원안
사전신고		개최일 3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 신고 (§32의2① 신설)	-	-
판매 제한	가격	도서정가/통상가격 이상 (§32의2② 신설)	좌동 (§33의2① 신설)	도서정가 이상, 통상적 참가비 이상 (§33의2 신설)
	수량	1인 10권 (§32의2② 신설)	1인 1권(1세트) (§33의2② 신설)	-
수입·지출 보고		30일 이내 관할 선관위 수입·지출 내역 보고 (§40의2 신설)	좌동 (§33의4 신설)	좌동 (§33의3 신설)
벌칙		수입·지출 보고 위반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3년이하/600만원)	좌동	좌동
		가격·수량 제한 위반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3년이하/600만원)	가격·수량 제한 위반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5년이하/1,000만원)	좌동
		사전신고 의무 위반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2년이하/400만원)	-	-
		-	위 두 죄를 반복 범한 경우 1/2 범위 가중, 수익 몰수	-

먼저 사전신고의 경우, 주진우의원안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출판기념회의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일정 및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안내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바,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짐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효과적인 계도 및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둘째, 판매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진우의원안** 및 **김미애의원안**은 도서의 가격을 정가 또는 통상가격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민전의원안**은 도서 가격뿐만 아니라 행사 참가비까지 통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서 가격만을 통제할 경우,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우회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비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 금액으로 규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대안으로 보임.

아울러 수량 제한과 관련해서,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특정 권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과 같이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에 포함할 경우 수입·지출 내역 보고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일정한 기한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⁵⁾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별도로 분리하여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적 부담,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넷째,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가격 및 수량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주진우의원안은 이를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미애의원안과 김민전의원안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생략)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일정 가격 또는 수량 이상으로 판매한 행위 자체를 단순 제한 규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로서 보다 중대한 범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출판기념회 개최신고 또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보고 등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제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